

# 이사회 운영 규정

|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
| 사규번호 | 규정 1980 - 5 |
| 담당팀  | 기획팀         |
| 제정일자 | 1980.02.01  |
| 개정일자 | 2024.04.25  |

## 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태영건설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이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3 조 (구 성)

이사회는 등재이사 전원 (사외이사, 기타비상근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## 제 4 조 (책임과 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## 제 5 조 (의 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6 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사회 의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 제 7 조 (종 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2월, 3월, 8월, 12월에 소집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 제 8 조 (소집절차)

이사회 소집은 그 소집목적에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겐 전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## 제 9 조 (결의사항)

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 - 1)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
  - 2)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
  - 3) 영업보고서의 승인
  - 4) 재무제표 등의 승인
  - 5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서의 보고
2. 정관 및 주요 규정에 관한 사항
  - 1)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- 2) 이사회 규정에 관한 사항
3. 경영에 관한 사항
  - 1) 경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에 관한 사항
  - 2)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- 3) 대규모 신규사업의 추진
  - 4) 중요한 자산 및 영업의 양수도(연결자산규모 10분의1 이상)
  - 5) 회사의 합병/분할
4. 재무에 관한 사항
  - 1) 자금조달(사채의 발행)
  - 2) 자기주식 취득/처분
  - 3)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
5. 이사에 관한 사항
  - 1)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- 2) 이사회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
  - 3) 이사와 이 회사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
  - 4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  - 5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. 단, 감사위원 제외
6. 기 타  
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별히 부의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## 제 10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# 제 11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동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3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 12 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사의 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②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한 자는 그 뜻을 의사록에 기재할 수 있다.

#### 제 13 조 (주무팀)

- ① 이사회 주무팀은 기획팀으로 한다.
- ② 주무팀장은 이사회 준비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문서관리규정에 의거 의사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#### 제 14 조 (부 칙)

- ① 이 규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은 2007년 8월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③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④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⑤ 이 규정은 2019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⑥ 이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⑦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